수산업협동조합법 위반

[인천지방법원 2010. 6. 18. 2009고정6102]



【전문】

【피고인】

【검 사】이정호

【변 호 인】 변호사 이경민 외 1인

【주문】

]

피고인들을 각 벌금 800,000원에 처한다.

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,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.

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.

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비정규직의 제공 요구로 인한 수산업협동조합법위반의 점은 무죄.

[이유]

1

[이유]

1

[이유]

【이유】

]

[이유]

1

[이유]

]

[이유]

1